

검사공무원증표

1. 소속:
2. 직위:
3. 성명:
4. 유효기간:
 년 월 일
 ~ 년 월 일

3.5×4.5cm
(3개월 이내의
촬영사진)

위 사람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2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허가·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한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시·도지사

시장·군수·구청장

80mm×100mm[백상지(150g/㎡)]